

제286회 정례회
성 북 구 의 회

의안
번호 제429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
제정(안) 검토보고서



행정기획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(안) 검 토 보 고 서

행정기획위원회
전문위원 이 병 곤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 429 호
- 제 출 자 : 임현주 의원 외 10 인
- 제 출 일 : 2021. 11. 16 .
- 회 부 일 : 2021. 11. 17 .

2. 제안이유

성북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지대책의 마련과 신고센터의 설치 및 부실공사 접수·처리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(안 제1조~제2조)

- 안 제2조(정의) “부실공사¹⁾”

나. 이 조례의 적용 범위²⁾ 규정 (안 제3조)

다. 부실공사 방지대책³⁾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
- 1)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) 성북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당 공사 계약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 사업 관리 건설공사 제외
- 3) 1. 공사의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 2. 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
3. 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라. 공사감독과 공사시행 통보⁴⁾,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(안 제5조~제7조)

마.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⁵⁾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
바. 부실공사의 신고·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~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, 제49조

제2조(정의)

4. “건설공사”란 토목공사, 건축공사, 산업설비공사, 조경공사, 환경시설공사,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·유지·보수하는공사(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)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
가. 「전기공사업법」에 따른 전기공사

나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른 정보통신공사

다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 소방시설공사

라. 「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

○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49조

제49조(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)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, 계약서,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,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4)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개요, 공사기간, 시공업체, 공사감독 공무원 등을 해당 동장에게 서면으로 통보

5)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.

○ 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 제12조

제12조(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)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입법예고 : 2021. 11. 16. ~ 2021. 11. 21.

5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성북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의 품질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부실공사의 징후를 초기에 시정할 수 있도록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매뉴얼에 의하여 즉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다만, 본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부실공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.